

4.1.20 재무·회계규정

제정 2000. 04. 21.
전부개정 2013. 08. 26.
개정 2017. 10. 31.
개정 2024. 12. 0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예산·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대학교의 예산·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,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등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회계연도)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회계의 구분) 본 대학교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.

제5조(수입의 직접사용 금지) 본 대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·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,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.

제6조(자금의 관리) 모든 수입금은 자금 집행계획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,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2장 예 산

제7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, 이를 서로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예산의 관리부서 및 집행부서) ① 예산관리부서는 기획연구처로 하며 예산의 편성·운영 및 통제 등의 업무를 한다.

②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을 배정받는 단위부서로 하며 당해회계연도 부서 예산안의 신청 및 집행업무를 한다.

제9조(예산의 요구) ① 각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연구처장은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04.>

제10조(예산의 편성절차)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고 편성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2.04.>

②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조정에 있어 예산집행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위원회를 구

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31.>

③ 예산의 배정, 조정, 심의 등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예산의 공개 및 확정)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안을 공고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2.04.>

제12조(준예산) ①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고,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교직원의 보수
2.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
3.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
4.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<개정 2024.12.04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추가경정예산) ①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본예산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추가경정예산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
제14조(예산집행의 내부통제)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③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결산이 완료된 후 배정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,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산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의 전용) ① 총장은 동일 관내의 향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의 종합조정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②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예산전용요구서를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전항의 요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예산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총장은 예산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예산의 이월 및 계속) ①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회계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할 수 있다.

② 공사나 제조,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 경비의 총액과 일부 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.

제3장 회 계

제17조(수입·지출명령) ① 본 대학교의 수입과 지출명령은 총장이 한다.

② 제 1항의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권자,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권자라 한다.

③ 제 1항, 제 2항의 세입징수권과 지출명령권의 일부를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수입금의 징수와 수납) ① 본 대학교의 모든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원이 수납한다.

②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(위임을 받은 자 포함)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.

③ 세입징수자는 납부 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.

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)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년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연도 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.

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 할 수 있다. 그러나 출납 폐쇄후의 반납금은 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과오납의 반환) ① 과오납 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.

② 과오납 반환결의서는 수입결의서에 주서 또는 (-)처리로서 결의한다.

제21조(지출의 원칙 및 방법)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
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③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.

④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지출의 특례) ① 물품구입비, 소송비용, 여비, 공사·제조·용역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.

② 선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급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한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4장 계 약

제23조(계약) 본 대학교의 공사,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에 관계되는 원칙 등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관련조문에 의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장 결 산

제24조(결산) ① 본 대학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다.

② 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확정된 교비회계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